

부산지방기상청 종합감사 결과(요약)

【 2022. 5. 25.(수) / 감사담당관 】

1 감사 개요

□ 목적

- 부산지방기상청의 예산집행, 인사운용, 예·특보 및 기상정보 생산, 방재기상업무, 기상관측, 대국민서비스 등 업무 전반 점검
- 문제점을 도출·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관할 지역의 방재업무 등 기상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

□ 근거

- 「기상청 자체감사 규정」 (기상청훈령 제1023호, 2021. 10. 13.)
- 2022년도 자체감사운영 기본계획(감사담당관-890, 2022. 3. 2.)

□ 대상기관 / 범위

- 부산지방기상청의 2017년 이후 수행한 업무 전반

□ 감사 기간 및 인원

- 감사 기간: (예비) 4. 11.(월)~15.(금), (실지) 4. 18.(월)~22.(금), 10일간
- 감사 인원: 감사담당관 외 5명

□ 중점사항

- 예·특보 및 기상정보 생산과 방재업무 수행의 적정성
- 기상관측업무 및 관측장비 운영의 적정성
- 지역 기상기후서비스 및 기상과학관 운영 실태
- 인사 복무,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, 시설물관리의 적정성
- 각종 연구용역, 위탁용역 등 사업 실태 등

2

감사 결과

□ 감사처분 총괄표

구분	징계	경고	주의	시정	개선	통보	통보 (시정완료)	계	모범 사례
건수 (처분요구)	-	2	5 (부서 6, 개인 2)	1	-	3	-	11	2

□ 감사처분 목록

번호	제 목	처분종류	부 서
1	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	주의(부서)	○○과 ◇◇과 △△과
2	정부구매카드 사용 관리 부적정	주의(부서)	○○과
3	국립밀양기상과학관 옥상 조경 공사 사업 추진 부적정	주의(개인)	○○과 △△과
4	국유재산 대장 관리 소홀	시정	○○과
5	방재기상관측장비(AWS) 검정업무 관리 부적정	경고(부서) 통보	●●과
		주의(부서)	◇◇과
		경고(부서)	■●원
6	기후변화 이해 확산 용역사업 관리 부적정	주의(부서)	△△과
7	기상대 방재기상업무 수행범위 개선	통보	□□과
8	131기동기상지원 일지 작성 개선	통보	□□과
9	자체 기상관측망 구축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	적극행정 면책 (부서주의→면책)	◇◇과

□ 모범사례

번호	제 목	모범부서
1	신청사 건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(18억) 노력	기획운영과
2	효율적 방재업무 수행을 위한 「유관기관 통합 감시시스템」 개발·운영	관측과

3

문제점 및 처분요구

①

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

○○과
◇◇과
△△과

【 문제점 】

- 시설장비유지비(210-09)로 집행이 가능한 국내출장 여비는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유지보수용역 감독과 관련한 출장에 한정하여 가능하나,
 - 비교관측, 관계기관 업무협약,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출장여비('17.6.~'22.3., 130건, 총 6,670천 원)를 국내여비가 아닌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
- 또한,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, 공구, 기구,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에 집행이 가능하나,
 -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야외 상설무대 설치 등 3건(119,783천 원)에 대해 공사비(420-03)가 아닌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여 목적 외 사용
- 관리용역비(210-15)는 청사의 시설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에 집행이 가능하나,
 - 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차량운송 시범용역사업의 임차료(210-07) 성격의 비용(10,200천 원)을 관리용역비로 집행

【 처분요구 】

- 예산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 (부서주의)

②

정부구매카드 사용 관리 부적정

○○과

【 문제점 】

- 「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」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 함
- 하지만, 업무추진비(240-01, 240-02)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면서 145건('20.7.~'22.3.)에 대해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지 않았고, 서명 안 된 영수증을 지출서류에 보관함

【 처분요구 】

- 정부구매카드 사용 시 영수증에 실명 서명이 누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주의 촉구 (부서주의)

③

국립밀양기상과학관 옥상 조경 공사 사업 추진 부적정

○○과
△△과

【 문제점 】

- 2020년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직원 복지를 위해 옥상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인조식물로 조경을 조성하는 공사는 **단일공사로** 공사량을 분할하여 **계약할 수 없으나**
 -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 의견으로 조달 반려 후, 1인 견적 수의계약 2건으로 자체 **분할 계약함**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저해
-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계상되지 않은 **신규사업**(계약종류와 무관,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)은 **일상감사** 대상이나
 -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비(85백만 원)를 마련한 신규사업에 대한 **일상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**, 사업 과정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관리 미흡

【 처분요구 】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주의 촉구 (**개인주의**)

④

국유재산 대장 관리 소홀

○○과

【 문제점 】

- 신규로 설치하는 공작물의 공사비 지출 성격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**국유재산에 반영하여 자산처리** 하여야 하나
- 옥상 조경, 울타리, 야외 상설무대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5건(140,014천 원)에 대해 **비용으로 회계 처리**하였으나 건물, 공작물 등 **국유재산 대장가액에 증감사항을 미반영**
 - 향후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해지고 유지관리 업무에 **공백 우려**

【 처분요구 】

- 옥상 조경, 울타리 설치 등 5건 지출 건의 증감사항을 기존 국유재산 대장 반영 (**시정**)

【 문제점 】

-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 제13조에 따라 방재기상관측장비는 정기적으로 유효기간(3년) 만료 전에 현장 검정을 받아야 하며, 관측과에서는 연간 계획에 따라 검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함
 - 하지만 최근 5년('17~'21년) 동안 AWS 12개 지점에서 유효기간(3년)이 초과되었으며, 특히, 4개 지점은 30일이 초과 됨
- 한편, 관측과에서는 계측표준협력과 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연간 검정실적, 검정계획서 및 검정업무 시행계획(안)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며,
- 또한 계측표준협력과는 연간·분기별 검정실적 관리에 소홀

【 처분요구 】

- 기상측기의 검정업무가 철저히 관리 되도록 경고 조치 (부서경고)
- 「기상청 사무분장 규정」에 따라 검정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주의 조치 (부서주의)
-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과 「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」에 따라 철저한 보고와 검정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검정 일정 준수 (부서경고)
- 검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관·부서별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 시행 (통보)

【 문제점 】

- '기후변화 이해확산 사업'과 같은 용역사업의 산출내역서는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함
 - 그러나 2019년 사업에서 퀴즈대회 횟수를 축소하는(2회→1회) 등 과업을 변경하였으나 과업내용과 금액이 조정된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고, 2018년에는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받지 않음
- 또한, 계약상대자가 감독검사를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요청하였으나 지체상금 부과를 검토하지 않고 기한 내로 작성된 완료신고서를 기준으로 감독검사를 완료함

【 처분요구 】

- 용역사업 관리 및 성과의 검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 (부서주의)

【 문제점 】

- 「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에서 기상대는 방재기상업무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기상대의 관할구역 기준이 없음
- 울산·창원기상대는 비상근무의 수행 기준과 방재관계기관 협력 및 예·특보 통보처 관리 등의 관할구역을 다르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

구분	울산(기)	창원(기)
비상근무 수행 기준*	울산시	창원시
통보처 관리 및 협력회의 등**	울산시, 양산시, 밀양시	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

* 「부산지방기상청 방재기상업무지침」의 비상근무 수행 기준 관할구역

** '15년 지방청조직 개편 이전 「예보업무규정」의 기상대별 육상국지예보구역

- 방재기상업무 지원 관련 지방청과 기상대의 중복이 많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
 - 131기동기상지원('19~'21년): 울산기상대의 울산시 지원 12일 중 8일, 창원기상대의 경상남도·창원시 지원 6일 중 5일 부산지방기상청과 중복 지원
 - ※ 131기동기상지원 횟수: 부산(청) 411회, 울산(기) 16회, 창원(기) 6회
 - 위험기상 피해예방 공익캠페인 공문발송: 5개 시·군 중복,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상지원: 2개 시·군 누락

【 처분요구 】

- 기상대가 방재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및 지방청과의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자체 실정에 맞게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 (통보)

【 문제점 】

- 「방재기상업무규정」에 따라 위험기상이 예상되거나 방재관계기관에서 기상지원 요청할 경우 기상상황·전망 및 예·특보를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131기동기상지원 일지(일시, 대상, 내용)를 작성해야 하나,
- 전화 수단 외 산불현장에서 기상브리핑하고, 지자체 태풍·호우 대책·점검 회의에 참여(영상회의 포함)하고도 131기동기상지원 일지를 미작성
 - ※ 2019년부터 산불현장 기상브리핑(부산청 16회), 태풍·호우 대책회의 참여(울산(기) 7회, 창원(기) 3회)
- 산불현장 기상브리핑 등을 수행하고도 131기동기상지원 일지를 미작성할 경우 경험·노하우 공유와 방재기상업무 개선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

【 처분요구 】

- 전화 수단 외 131기동기상지원 수행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일지 작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(통보)

【 문제점 】

- 지역 기상이슈(부산 해무, 초고층 빌딩풍 등)에 선제적 대응 및 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부산지방기상청 자체 특수목적의 기상 관측망을 구축하여 예보관 등의 실시간 활용체계 구축 및 방재업무 기반 강화
 - ※ 해운대 일대 매우 짙은 해무로 해수욕장 입욕금지, 주요대교 차량운행속도 제한('19.7.3.)
 - 부산 해안(해운대, 영도)의 해무관측 시정계 설치(6,307천 원, '19.8.)
 - 광안·남항대교의 시정 및 풍향·풍속 관측자료 실시간 수집(3,300천 원, '19.11.)
 - ※ 부산(청)-부산시설공단 간 관측자료 공동활용 MOU 체결('19.9.30.)
 - 해운대(엘시티 등) 빌딩풍 관측용 바람관측장비 설치(8,800천 원, '20.7.)
 - ※ 기상청-부산시-부산대 간 빌딩풍 위험예방 및 대응 MOU체결('20.11.13.)
 - 부산 해무 종합관측소(이기대 공원, 드론 임시공역 확보) 구축(19,019천 원, '21.6.)
- 다만, 부산지방기상청 자체 기상관측망을 구축하면서 자산취득비(430-01) 및 공사비(420-03), 일반연구비(260-01)를 사용해야 하나 시설장비유지비(210-09)로 사용

【 처분요구 】

- 예산 사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하고 적극행정으로 면책 (부서주의→적극행정 면책)

(개요)

- 기상청 청사로서의 상징성 확보와 지진·침수 등으로부터 부산청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으로 중단없는 기상·기후서비스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4차에 걸친 총사업비 조정·증액 함으로써 청사 이전 과업을 완수함

(추진성과)

-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등 설계비 1차 증액(9,931 → 10,065백만 원)
- 연약지반 기초파일공사 증가분과 필로티 구조로 인한 공사비 2차 증액(10,065 → 11,330백만 원)
- 공사비 조정, 농작물 손실보상금 증액 등 3차 조정(11,330백만 원)
- 지진에 따른 액상화 우려로 관련 법에 근거하여 기존 파일공법에서 액상화 방지 공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4차 증액(11,330 → 13,114백만 원)

(기대효과)

- 지진·침수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측우기를 건물에 형상화하는 등 부산지방기상청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새 도약 발판 마련

(추진배경)

- 부산·울산·경남지역의 기상실황 감시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관측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청과 관계기관 관측자료를 통합한 기상실황 감시시스템 개발

(추진내용)

- 부산청과 관계기관 관측자료를 동일 화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리눅스 기반 ‘유관기관 통합실황 감시시스템’을 비예산으로 자체개발('20.8.)
- 관측자료 수집률, 관측환경, 격자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개 권역의 148개소(기상청 77, 산림청 38, 지자체 33)를 선정하여 실시간 관측자료 표출
- 미수신자료 테이블 유색 표출, 지점번호 및 지점명 클릭 시 해당지점 관측자료 표출 등 시스템 개선('21.4.)

(기대효과)

- 관측공백 해소 및 효율적인 위험기상 조기 탐지를 통한 선제적인 예·특보 생산 지원으로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